

FTA 활용 수산물 수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

해양수산부와 관세청(이하 “각 기관”)은 상호간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(이하 “협약”)을 체결한다.

제1조 (목적) 본 협약은 각 기관이 국내 수산물의 자유무역협정(이하 “FTA”) 활용 촉진을 통한 해외 수출확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협력범위) 각 기관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‘수산물품질인증서’, ‘지리적표시등록증’,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‘수산물 이력추적관리등록증’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‘유기수산물인증서’를 FTA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래 각호에 명시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성실하게 협조한다.

- 1. 관세청은 해양수산부 발행서류를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 및 수산물 등에 대한 수출 정보를 해양수산부에 제공**
 - ‘수산물품질인증서’ 등 해양수산부에서 발행한 국내 수산물 인증서류를 원산지 증빙서류로 인정
 - FTA 활용 수출실적 등 수산물 수출 통계 제공
- 2. 해양수산부는 원산지증빙서류에 대한 발급정보 등을 관세청에 제공**
 - ‘수산물품질인증서’ 등의 발급 실적 및 관련 통계 제공
 - ‘수산물품질인증서’ 등의 FTA 원산지증빙서류 인정 관련 발급 및 통계 정보 제공
 - 수산물 이력정보 등 제공
- 3. 양 기관은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정보 공개 및 정기적 업무협의 개최**
 -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정보를 각 기관 홈페이지(관세청 YES-FTA포털, 수산물품질관리원) 등에 공개
 - 수산분야 FTA 수출활용 제고를 위한 양 기관 간 정기적(연 1회 이상) 업무협의 개최

4. 운영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, 협약 내용의
원만한 운영을 위해 각 기관의 연락창구 개설

- 관세청 :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
- 해양수산부 : 수출가공진흥과,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

5. 그 밖의 기관 간 인적교류, 사업지원 등 수산물의 FTA활용 수출에 있어 필요
하다고 판단되는 제반 사항 (다만, 영업비밀·계약정보 등 민감한 정보는
대상에서 제외)

제3조(업무협약) 각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시로 업무협의를
진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실무자를 지정하여 담당하게 한다.

제4조(업무협력 비용의 집행) 각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집행된
업무추진 비용을 별도로 합의·집행한다.

제5조(비밀유지) 각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달성을 위한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
상호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6조(효력) ①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발생되며, 어느 일방이 3개월 전에 해지
의사를 개진한 서면통보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.

② 각 기관은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, 합의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기
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·서명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6년 12월 7일

해양수산부
차관 윤학배

관세청
청장 천홍욱



